

# 기안용지

(전화: 731-6186 )

기호 문서번호	와 30114-		시행장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출영구, 10.5.3.1.	시	장	
추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7. 7.			
보존 기관	올림픽준비단장 <b>전철</b>	합 조 기 관	법 무 담 탐 관 법 제 제 장	문 서 통 계
	올림픽기획관 <b>의</b> 문화담당관 <b>의</b>			
기안책임자	이노근 <b>의</b>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 신 명 의		
제 목	"동상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예규 시행			
제 1 안	내부결재 <span style="float: right;">82-814 에가자 488</span>			
	1. 우미시가 관내 운영하는 공원, 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개인, 단체 등이 동상이나 기념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의 건립 절차, 대상선정, 위치선정, 부지면적 등 제반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을 별첨과 같이 예규로 제정, 시행하고자 하며 아울러 시보 에 게재 공포하고자 합니다.			
첨 부	1. 동상, 기념비 건립부지 사용요청 검토보고 (시장방침 1부) 2. 동상, 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예규 호)			

송

의

제 2 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시보제세 의회
1. 통상.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을 별첨과 같이 예규로써 시행코져
시보제세를 다음과 같이 의회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계제제목 : 통상.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예규 호)
나. 계제일 : '87. 8. . 시보
다. 계제내용 : 별 첨
첨부 1. 통상.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표.
제 3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통상및 기념비.설치에 관한 회시
1. 공원 30114-462(86. 6. 10), 공원 30114-537(86.7.12),
녹지 01254-0116(86. 8. 20), 공원 30114-831(86. 11. 25), 녹지
( 2 )-87(86. 12. 15), 공원 30114-881(86. 12. 17), 공원 30114

7(87. 2. 7), 공문 30114-398(87. 6. 12)호와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로 협조 요청한 동상, 기념비 건립부지 사용 검토요청에 대하여

그동안 동상, 기념비 자문위원회 및 시정자문위원회 (관광, 체육, 문화분과위원회, ~~방산~~ ~~합정~~ ~~로이~~ ~~동년~~ ~~근로~~ ~~니~~ ~~처리~~  
도시개발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바, 다음과 같이 ~~확산~~ ~~하~~ ~~니~~ ~~업~~ ~~무~~ ~~차~~ ~~마~~ ~~시~~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동상, 기념비의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별첨 참조) 을 예규로 시행  
계획임.

- 자문위 구성운영      ○ 신청 및 심의절차      ○ 선정기준
- 분야별 형평유지      ○ 위치 선정      ○ 설치부지면적
- 설치제작시 고려사항      ○ 허가 및 사후관리 등

나. 동상, 기념비 건립부지 사용요청 검토뢰시 (별첨 참조)

- 동상 4기, 기념비 5기 - 건립부지 할애

· 동상 - 길마미아(보마매공원), 신채호(서울대공원),

조명하(서울대공원), 전진환(공단근치)

· 기념비 - 강소천(어린이대공원), 이하운(서울대공원),

박지원(울곡로 낙원동 녹지대), 차천로(서울대공원)

박목월 (한양대부근 녹지대)

○ 무인 독립운동 기념비, 태극기해설탑 - 독립기념관으로 유도

○ 건립부지규모는 조정 (4.8평이내)으로 시행

○ 건립모형은 사전 예술위원회 심의

타. 구체적인 위치 선정 및 허가절차 등 세부적인 절차는 귀국에서 조치

하기 바람.

첨부 통상 기념비 건립부지 사용요청 검토 보고 1부, 끝.

수신처 공원과장, 녹지과장, 건축지도과장

서울특별시 동상, 기념비 건립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7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임 보 현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동상, 기념비 건립 기준에 관한 규정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공원, 녹지대 등에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에 관한 동상이나 기념비의 설치에 관한 기준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 서울특별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원, 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개인, 단체 등이 동상이나 기념비를 영구히 설치할 경우에 적용된다. 단, 순수한 창작 미술작품의 전시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① 동상이나 기념비의 설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상, 기념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 원 수 : 위원장, 위촉직 20명, 당연직 4명 등 25명 내외로 한다.

2. 구 성 :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은 사학, 언론, 문학, 예술, 공원, 환경설계, 건축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자 중 덕망있는 자를 선정, 위촉하며 당연직은 올림픽준비단장, 환경녹지국장, 시정연구관, 올림픽기획관으로 하되 위촉직은 운영시마다 별도로 구성한다.

3. 운 영 : 년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상, 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통상.기념비의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설치하고자하는 대상의 인물이나 사건의 고종및 사료에 관한 사항
  3. 설치하고자하는 통상이나 기념비의 건립업부, 규모, 위치등에 관한 사항
- ③ 통상.기념비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통상.기념비 자문소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둘수 있다.

제 4 조 ( 신청및 심의절차 ) ① 통상이나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자는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통상.기념비 건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부서(건립하고자하는 공공용지관리부서)에서는 제 3 조 규정에 의한 통상.기념비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하며 심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건립대상, 목적
  2. 건립주체의 주소,성명
  3. 건립희망위치와 그 사유
  4. 건립기간, 건립제한, 건립규모(면적, 높이), 건립재료, 삽입문장, 건립형태등 건립계획
  5. 설치대상 인물이나 사건의 요약및 세부내용
  6. 건립작가명 및 활동 경력
  7. 사후 관리 계획서등
- ② 통상.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는 통상.기념비 설치계획서를 검토하여 건립적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설치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립위치, 건립규모, 건립기간등 제반 건립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 선정기준 ) ① 통상.기념비 자문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고자하는 통상이나 기념비를 선정한다.

1. 국가와 민족의 융성,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항 (역사성)
  - 가. 국난극복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인물이나 사실
  - 나. 독립운동의 정신적 줄기가 된 인물이나 사실
  - 다. 의병.의열사 반공투사
2. 대상인물이나 사실이 국민의 교양증진과 사회 교육적인 사항 (교육성)

3.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에 뛰어난 업적과 학문이나 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항, (문과, 예술, 학문 존중)
  4. 기타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현저하게 부합되는 인물이나 사건
  5. 대상인물이나 사실이 다수의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사항 (보편성)
- ② 대상인물이나 사실은 이미 역사적 자료나 고종 또는 학문적 비판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역사적 평가가 정립된 사항이어야 한다.

제 6 조 ( 분야별 형평유지 )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에 대한 심의는 다음사항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삼국시대이전,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말이후의 시대별 형평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대상분야별 형평
3.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규모에 대한 형평

제 7 조 ( 위치선정 )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위치를 심의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묘명, 동명, 출생지, 묘소, 활동이나 사실의 근거지등 연고성
2.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성격과 공원 녹지대의 성격
3. 설치하고자하는 공원이나 녹지대의 과밀화 정도
4. 독립운동에 관련된 동상이나 기념비는 가능한한 독립기념관통으로 유도

제 8 조 ( 설치부지면적 ) ①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는 다음 규모 범위내에서 설치하며 동상, 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부지면적을 정하여야한다.

1. 동 상 : 부지면적 16m<sup>2</sup>이하
2. 기 념 비 : 탑 형 - 부지면적 16m<sup>2</sup>이하  
비 문 형 - 부지면적 10m<sup>2</sup>이하

② 기설치되어있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상, 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 기존 동상이나 기념비의 규모,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할수 있다.

제 9 조 ( 설치제작시 고려사항 ) ①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공원, 녹지대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품위있고 내구성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②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의 형태, 문장의 내용은 충분한 역사적 고품으로 확인된 사항이어야 한다.

③ 설치하고자하는 동상이나 기념비는 작품성, 조형성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제 10 조 ( 허가및 사후관리 ) ① 동상, 기념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심의의견을 기초로하여 공원법,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하되 허가시에는 서울특별시 예술위원회에 동상, 기념비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작품성과 조형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상, 기념비를 건립한 주체는 동상, 기념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외 기부체납 여부에도 불구하고 청소, 보수등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 시행 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통상, 기념비 건립부지 사용요청 검토 보고

통상	기념비	건립부지	사용요청	검토 보고
<i>홍</i>	<i>홍</i>	<i>7.18</i>	<i>7.26</i>	<i>7.26</i>

*전차장*    *전차장*    *기회와리실종*    *7.26*    *7.26*

*정수*    *정수*    *시원*    *시원*    *시원*

*지장*

1990

통 상 기 념 비 건 립 부 지 사용 요 청 검 토 보 고

## 통상, 기념비 건립부지 사용 요청 검토 보고

###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 의견수렴

- 소위원회 개최 : '87. 6. 26. 15:00
  - 건립기준 및 규모 조정
  - 건립대상자에 대한 대책 심의
- 소위원 및 자문위원 검토 : '87. 7. 6 - 7. 10.
- 시정자문위원 심의 : '87. 7. 24.
  - 관광 체육 문화 및 도시개발 본과위 20명

#### 1. 건립기준 및 규모 조정

##### ○ 건립기준

- 대상선정
  - 국가인족의 융성발전에 현저한 기여 (역사성)
  - 국민의 교양증진과 사회교육적 사항 (교육성)
  - 민족문화계승발전과 학문발전에 획기적 기여 (문예, 학문존중)
  - 다수의 국민감정에 부합 (보편성)
- 위치선정
  - 가로명, 동명, 출신지, 활동근거지 등 연고성
  - 설치하고자 하는 통상, 기념비와 장소의 성격(연관성)
  -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지역의 과밀 정도

##### ○ 건립규모(부지)

- 통 상 -  $16m^2$  (4.8평)이내
- 기 념 비 탑 형 -  $16m^2$  (4.8평)이내
- 비 료 형 -  $10m^2$  (3.0평)이내

\* 건립기준, 규모, 절차 등 규정사항이 합리적임.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원, 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개인, 단체 등이 통상이나 기념비를 영구히 설치하는 경우
- 순수한 창작 미술작품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3.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위 원 --- 20명 내외 (10명 이내 소위원회 운영 가능)
- 운 영 --- 년 2회 (상, 하반기) 운영  
운영시마다 별도 구성, 운영
- 기 능 --- 통상, 기념비외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대상인물 사건의 고종 및 사료에 관한 사항  
건립여부, 규모, 위치 등에 관한 사항

## 4. 설치 및 사후관리

-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품위있고 내구성있는 재료 사용
- 서울특별시 예술위원회 사전 심의.
- 기부채납여부 불구 사후관리 적극 노력

위의 제사항을 서울특별시 예규로 제정, 시행 추진.

참 부 : 통상, 기념비 건립기준에 관한 규정

통상, 기념비 건립신청자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요약)

○ 통 상 : 건립 신청 4기 전부 부지할에 권고

- 서울은 타대도시에 비해 통상이 상대적으로 적음.
- 도시의 품위와 역사적 고도로서 조화.
- 조형성, 예술성을 갖춘 통상 건립 중요.
-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고성과 연계 필요.
- 향후 독립운동가는 독립기념관으로 유도 필요.

○ 기 념 비 : 요청 7기중 5기 부지할에 권고

- 문화예술인들의 기념비는 시민의 정서 함양 기어.
- 문화도시 거미본위기를 갖고 교육적 의미도 동시 부여.
- 이미 건립의견이 모여 요청한것이므로 지원 필요.

○ 건 의

- 통상 4기, 기념비 5기 : 건립부지 할에 조치 (환경복지국)
- 건립부지 규모는 조정안(4.8평이내)으로 시행. (환경복지국)
- 건립모형은 사전 예술위원회 심의. (건설관리국)

1기  
리장

통상, 기념비 건립 신청 (참로 위원)

○ 소 위원 - 6명 전원

성명	전공	년령	현직
이현희	사학	51	성신여대 교수
최만빈	미술	46	서울미대 교수
송정숙	언론	50	서울신문 논설위원
장홍빈	기타	42	주공 주택 연구소장
오희영	기타	49	한양대학원 교수
유경환	언론	51	조선일보 논설위원

○ 자문위원 - 12명

성명	전공	년령	현직
김동택	문학	74	문인 협회장
이규택	언론	53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성수	사학	53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김통욱	문학	65	민족문화추진회장
박영석	사학	54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영종	조각	61	조각가, 진흥대 미대 교수
김경송	조각	72	예술원 회원
유준상	미술평론	57	현대미술관 전문위원
민정현	조경	53	정원문화연구원장
강건희	건축	51	홍익대 건축과 교수
진숙희	문학	68	국제펜클럽본부회장
민영수	-	67	관북회 사무국장

지상

姓名	性别	籍贯	民族	出生年月	文化程度	工作经历	政治面貌	健康状况	特长	其他
王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李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张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赵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刘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孙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周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吴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郑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王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李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张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赵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刘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孙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周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吴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郑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
王德胜	男	山西	汉族	1925	初中	1945-1948 山西	中共党员	健康	无	无